

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-굿케어 복지용구-

1. 계약기간

기관은 이용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.

- 1)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이용자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.
- 2)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, 개인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은 유효하다.
- 3)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.

2. 계약목적

- ① 복지용구와 이용자(수급자)와 보호자가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복지용구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-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,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용구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.
- ③ 급여제공 계획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복지용구 서비스를 이행하여 계약 이용자(수급자)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,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.

3. 급여계획의 수립과 반영

이용자(수급자)별로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그 욕구를 사정하고 급여계획을 수립 및 반영한다.

- 1) 복지용구 사업소가 이용자(수급자)의 욕구반영 및 본인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복지용구급여를 계약 체결한다.
- 2) 복지용구 급여품목 중 대여 장비에 한하여 복지용구 사업소는 급여개시 전에 적정한 요양급여 제공을 위해 개별 수급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욕구사정(신체상태, 질병상태, 인지상태, 가족 및 환경상태, 이용자(수급자) 및 보호자의 개별적 욕구)을 하고 이에 관한 총평 등을 기록한다.

4. 급여계약 체결

이용자(수급자) 및 보호자와 급여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 시 복지용구 급여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, 반드시 1부는 이용자(수급자)에게 제공한다.

ㄱ. 이용자(수급자)와 보호자는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, 계약 내용

은 계약당사자, 계약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, 비용, 대상별 항목 및 월 한도액 초과
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.

ㄴ. 계약에 필요한 구비서류

- ① 장기요양 인정서 1부
-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
- ③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증명서(해당자, 필요 시)
- ④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1부

구비서류는 장기요양 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,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증명서(해
당자, 필요 시),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
ㄷ. 복지용구 급여제공 전 이용자(수급자) 정보, 인정유효기간, 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반
드시 확인한다.

ㄹ. 이용자(수급자)는 체결된 계약 내용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의 이용이 가능하다.

ㅁ.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계약체결과 더불어 희망하는 급여내용을 복지용구 사업소명 등을
기재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입소이용의뢰서를 신청하거나 사업소에서 대신하여
신청해서 승인을 득해야 한다.

5.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

신원인수는 이용자(수급자)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
관에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,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이용자 관리에 의무를 다
한다.

신원인수의 권리,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ㄱ. 신원 인수방법

장기요양 이용자(수급자)의 거주지(가정) 또는 곳케어복지용구에서 이용자(수급자)나 보호
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,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
다.

ㄴ.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 권리 및 의무

신원 인수인은 이용자 건강과 질병 상태 및 가족 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
등의 월 이용료(본인부담금)를 부담하며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즉시 이를 기관에 통보
하여야 한다. 만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과 대리인에
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,
집기 등의 오 파손,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.

이용자(수급자)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(1) 이용자(수급자)와 신원인수인(보호자, 법정대리인 등)의 권리

① 보호자는 성별, 나이, 종교 및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
이용할 권리가 있다.

② 이용자(수급자) 및 보호자는 복지용구 제품에 관하여 적절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
볼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.

③ 이용자(수급자) 및 보호자는 질병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.

④ 이용자(수급자)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,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.

⑤ 이용자(수급자)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.

(2) 이용자(수급자)와 신원인수인의 의무

① 이용자(수급자)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건강 관련 정보를 욕구사항 시 사업소에 정확히 알려야 한다.

② 이용자(수급자) 및 보호자는 복지용구를 이용함에 있어 월 이용료(본인부담금) 납부의 의무가 있다.

③ 보호자는 기관의 동의 없이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,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.

④ 이용자(수급자)는 계약에 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

⑤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, 입원/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⑥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.

⑦ 이용자(수급자)가 의도적으로 본 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.

⑧ 복지용구 하자 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
⑨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·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.

(3) 기관의 의무

①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입소 시 회수/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 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.

② 이용자(수급자)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.

③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,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.

④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.

⑤ 기관은 이용자(수급자)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.(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)

6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ㄱ. 이용자(수급자)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연한도액은 이용자(수급자)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.

ㄴ.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가격으로 한다. 다만, 고시 가격이 변동 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. 복지용구 급여비용 중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,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.

ㄸ.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,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.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/2을 산정한다.

ㄹ.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, 설치비, 철거비,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,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이용자(수급자)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.

ㅁ. 이용자(수급자)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전동침대 등의 일부품목의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만 대여가격을 산정 가능하다.

급여가능	급여불가
구입 전 품목(10개품목) 수동휠체어, 배회감지기(대여2품목) 욕창매트리스, 경사로(구입 또는 대여 2품목)	전동·수동침대, 이동욕조, 목욕리프트(대여4개 품목) ※ 대여기간 중 입원한 경우,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 산정 가능(입·퇴원일은 15일에 미포함) 단, 수급자 입원으로 대여 종료료를 요청한 경우 요청된 시점으로 대여 종료

ㅂ. 사용가능횟수가 정해진 품목은 사용가능횟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·대여 가능하다.

-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가능(타 법령으로 제공받은 경우 구입 불가)

ㅅ.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한 품목이라도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다(경사로는 제외)

ㅇ. 이용자(수급자)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.

ㅈ. 이용자(수급자)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이용자(수급자) 1인당 연간(등급인정일로부터 1년) 160만원으로 한다.

ㅊ.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고시 제18조와 19조에 따른다.

1) 본인부담금

- 일반 대상자: 15% - 기초수급자 : 0%

- 의료, 감경 대상자: 6%, 9%

- 감경 대상자:

①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

②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

2) 공단부담금

① 서비스 이용자(수급자)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

②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

3)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.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.

4)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

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이용자(수급자)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

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른다.

구 분		금액(원)	내 역
연간 이용한도 160만원	공단부담금	85%	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% 중 85% 보험공단이 지급.
	본인부담금	15%	보험공단이 85%, 개인 부담금 15%,
		6%, 9%	의료급여수급자, 감경대상자.
		0%	기초생활수급자 ¹⁾ 의 경우 면제.

1)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수급자(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)는 전액 무료.

7. 계약의 해제

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.

ㄱ. 이용자(수급자)는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ㄴ. 서비스에 대한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이전에 계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ㄷ. 이용자(수급자) 본인 또는 그 가족(보호자)이 이용 종료를 희망하였을 때

ㄹ.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장 계약을 희망하지 않을 때

ㅁ. 대여제품 사용 중 노인요양시설 입소하거나 의료기관(병·의원 등)에 입원하였을 때

(※단, 병원입원 시 수동 휠체어, 욕창예방 매트리스는 계속 사용 가능)

ㅂ. 구입품목의 급여이용 계약 후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는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.

ㅅ. 물품 등의 하자,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『소비자분쟁해결기준』에 따라 수리, 교환, 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, 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.

계약 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, 민·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으로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①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,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.

② 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.

③ 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이용자 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.

④ 타 질환 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.

⑤ 기관의 장비 등을 고의, 중대한 과실로 오손, 파손, 멸실 하였을 경우.

⑥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.

⑦ 이용자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.

⑧ 이용자(수급자) 사망 및 장기입원.

⑨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

⑩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.

⑪ 이용자(수급자)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, 신체적으로 피해를 줬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(수급자)는 계약해지를 7일 전에,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, 전화,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,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.